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745

제출년월일: 2010. 2.

제 출 자: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가 2008. 11. 28자로 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「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」
 - → 「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
- 나. 법인 설립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4조)
-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 →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장 다.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- 3. 근거법규 :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5. 참고사항: 입법예고 의견제출 없음(2009. 11. 2 ~ 11. 23)

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"를 "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새마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"를 "새마을장학금"으로 하고, "관하여"를 삭제한다.

제2조 중 "장학금"을 "새마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호의 1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"로, "요하지 아니한다"를 "필요로 하지 아니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"기능, 체육 및 예능"을 "기능·체육 및 예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1인"을 "한 명"으로, "1자녀"를 "한 자녀"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(이하 "지회장"이라 한다)"를 "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지회장"을 "회장"으로, "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"을 "울산광역시중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회장"을 "회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상훈법"을 "「상훈법」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기타 선정당시"를 "그 밖에 선정 당시"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호의 1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"로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회장"을 "회장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관하여"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 조 | 제명 : <u>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</u> |
| <u>례</u> | 지급 조례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| 제1조(목적) |
|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("새마을 | |
|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" | |
| 이하 같다)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 | |
| 하는 <u>새마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</u> | <u>새마을장학금</u> |
| <u>한다)</u> 의 지급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| <삭 제> |
|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
| 제2조(장학금의 종류) <u>장학금</u> 의 종류는 유공자 | 제2조(장학금의 종류) <u>새마을장학금 이</u> |
|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| <u>하 "장학금"이라 한다)</u> |
| 구분한다. | |
| 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새마을장학생 | 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|
| (이하 "장학생"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 | |
| 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·여 새마을 | |
| 지도자 자녀로서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|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|
|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는 새마을지 | 하나에 |
| 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. | |
| 1. ~ 2.(생략) | <u>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</u> |
| 3.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| 1. ~ 2.(현행과 같음) |
| <u>기능, 체육 및 예능</u> 에 소질과 재능이 | 3 |
| 뛰어난 자 | 기능·체육 및 예능 |
| ② 제1항의 각 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 | |
| 에도 새마을지도자 <u>1인</u> 에 대하여 <u>1자녀</u> 로 | ② |
|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,기 | <u>한 명</u> <u>한 자녀</u> |
| 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| |
| 자는 제외한다. | |
| | |
|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현 행 | 개 정 안 |
| 제4조(추천 및 선발) ① 장학생은 매 학 | 제4조(추천 및 선발) ① |
| 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 | |
| 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<u>새마을운동울</u> | 사단법인 울산 |
| 산광역시중구지회장(이하 "지회장"이 | 중구새마을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 |
| <u>라한다)</u> 이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| |
| "구청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선정 | |
| 한다. 다만, <u>지회장</u> 은 <u>구새마을지도자</u> | <u>회장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</u> |
| <u>협의회장</u> 및 부녀회장, 문고지부회장 | 지도자협의회장 |
|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| |
| ② <u>지회장</u> 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| ② <u>회장</u> |
|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 | |
| 위에 따라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. | |
| 1. <u>상훈법</u> 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 | 1. 「상훈법」 |
| 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| |
| 2. ~ 3.(생략) | 2. ~ 3.(현행과 같음) |
| 4.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| 4. <u>그 밖에 선정 당시</u> 결정 순위 |
| | |
| | |
| 제8조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금은 장학 | 제8조(지급 및 정지) ① |
| 생으로 선발된 자가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|
|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| <u>해당</u> |
|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 | |
| 1. ~ 4.(생략) | 1. ~ 4.(현행과 같음) |
| ② 지회장 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 | ② 회장 |
| 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 | |
|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 |
| | |
| 계10고(그취) 시 구네 기케시 키 리시 | -레10고(그린) -레- |
| 제10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<u>관하여</u> | 세1U소(ㅠ식) <u><삭 제></u> |
|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| |
| | |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74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0. 2. 9(화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0 2. 11(목)

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2. 23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전병수 총무국장)

-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가 2008. 11. 28자로 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,
- O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●「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」
 - ⇒ 「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
- 나. 법인 설립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4조)
-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 ⇒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장 다.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